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93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4.

발 의 자: 정춘숙 · 윤미향 · 최혜영

고영인 · 김상희 · 남인순

서영석 · 전혜숙 · 김정호

인재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시·도 등에 설치된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갖추고,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단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·보급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, 그 업무의 범위가 단체급식의 위생·영양관리에 한정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.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, 식생활안 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또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

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,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. 최근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바,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매체로 추가함으로써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, 기관명을 '식생활안전관리원' 으로 변경함(안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, 제21조의3, 제21조의 4).
- 나.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"를 "총리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"을 "총리령으로 정하는"으로, "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"를 "지정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"을 "총리령으로 정하는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텔레비전방송"을 "텔레비전방송 또는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"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"을 "총리령으로 정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후단 중 "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"를 "이 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"를 "총리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"를 "총

리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"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"을 "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"를 "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"로, "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제5조제4항"을 "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중 "지원할 수 있고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1조의3) 제1항 중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를 "식생활안전관리원"으로 하며,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3(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·운영)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을 둔다.
 - 1.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
 - 2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· 개발
 - 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
 - 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
- 5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- 6.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7. 어린이 식생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· 연구
- 8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
- 9.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-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제2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"를 "총리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·제2 1조·제21조의3·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

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전단 중 "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를 "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후단 중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를 "식생활안전관리원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・판	제6조(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・판
매업소 관리) ① ~ ③ (생 략)	매업소 관리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조리·판매업소의 관리방법,	4
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	
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보건</u>	총리
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	<u>령으로 정한다</u> .
<u>으로 정한다</u> .	
제7조(우수판매업소 지정 등) ①	제7조(우수판매업소 지정 등) ①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	
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어린	
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<u>보건</u>	총리
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	<u> 령으로 정하는</u>
<u>으로 정하는</u> 안전하고 위생적인	
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	
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	
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	
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	
(이하 "우수판매업소"라 한다)	
로 <u>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</u>	<u>지정하여</u>
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	
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	
게 할 수 있다.	
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	②

자 하는 자는 <u>보건복지부장관과</u>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 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- 제10조(광고의 제한·금지 등) ① (생 략)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가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④ (생 략)
- 제14조(품질인증기준 및 표시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(이하 "품질인증식품"이라 한다)은 용기· 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

	총리령으로 정하는
	③ (현행과 같음)
제	10조(광고의 제한·금지 등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
	텔레
	<u>비전방송 또는 「인터넷 멀티미</u>
	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
	<u>넷멀티미디어 방송</u>
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	14조(품질인증기준 및 표시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
	총리령으로 정하는 -

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(이 하 "품질인증식품 표시"라 한 다)를 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<u>식</u> 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 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 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 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 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15조(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) 지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 공·수입·조리하는 자는 품질 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~ ⑥ (생 략)
-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, 심사,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 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

③
<u>대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
기관 또는 단체에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세15조(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)
①
①
①
①
①
이 경우
 <u>이 경우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---- 총리령으로 정한다. 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
경 명령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· 사용정지 등 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 한다.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(이하 "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"라 한다)의 통합 운영ㆍ 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 치・운영할 수 있다.
- 1.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 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

제18조(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 제18조(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 경 명령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 유)

> (3) ---------- 총리령으로 정한다.

|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 설치・운영) ① (현행과 같 음)

<삭 제>

- 의 연구 · 개발
- 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 원에 대한 교육·훈련
- 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 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- 5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및 홍보
- 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 무
-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・운영할 수 있다.
- ④ (생 략)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
리지원센터
「학교급식
법」 제5조제4항
④ (현행과 같음)
⑤

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있고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 설>

	 	- – –
	 지원할	수
<u>있다</u> .		

- 제21조의3(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·운영) 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을 둔다.
 - 1.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 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 의 연구·개발
 - 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 원에 대한 교육·훈련
 - 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 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 - 5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및 홍보

- 6.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7. 어린이 식생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· 연구
- 8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 · 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 한 업무
- 9.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-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 로 한다.
-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관리원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의3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| 제21조의4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전관리원-----
 - 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) ① -

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 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- 제24조(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평 가 등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· 평가수준의 조사절차,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 령으로 정한다.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식생활 안전・영양수준 평
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총</u>
리령으로 정한다.